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검사 의뢰권자 확대 등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

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외검
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동물검사 의뢰권자 확대 등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학대 등을 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검사 의뢰 대상을 피학대동물(제1항제1호)로 제한하고 동물검사 의뢰 대상기관을 변경하며, 검사 요령 등 동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신고 등) ① ----- ----- ----- ----- ---- <u>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u> 신고	④ <u>제1항제1호에 따라</u> -----

현행	개정안
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검사기관에----- -----있으며, 검사 요령,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은 동물검사와 관련하여, 첫째, 동물검사의 의뢰권자에 수사기관장을 추가하고, 둘째, 동물검사의 의뢰 대상기관을 변경하며, 셋째, 동물검사의 요령 및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 나누어 검토함.

첫째, 현행법 제39조제4항은 동물의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동물검사의 법적 근거규정으로, 동물검사 의뢰권자를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와 ②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검사는 그 결과가 동물학대 사건에서 현행법 제10조의 ‘동물학대 등 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¹⁾를 판단하

1) 위반이 입증될 경우,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이 동물검사 의뢰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신고의 접수기관에 수사기관을 포함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현행법의 동물검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9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검사의 취지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동물검사 의뢰 대상기관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한 의뢰 대상에 대하여 지칭하는 명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의 약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용어로 변경하는 것인바,²⁾ 법 체계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어떠한 인용의 표현도 없이 다른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약칭을 활용하고 있어, 해당 명칭이 지칭하는 대상이 자칫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조문 인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동물검사 의뢰 대상기관 중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으로 변경하면서 검사기관의 지정을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데,

고시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동물검사 의뢰 대상기관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장 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게 될 수 있음.³⁾

그런데, 동물검사는 동물의 학대 위반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실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④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4(가축방역·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3) 물론, 해당 고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장을 그대로 관할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면 동물검사 의뢰 대상기관에 변동은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기관 지정 절차를 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동물학대 사건에서 동물학대 등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공신력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⁴⁾의 장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신력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물검사 의뢰 건수는 2022년 323건, 2023년 453건, 2024년 327건으로, 대부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되었으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경우 2024년에 4건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의뢰된 바 있음.

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357호, 2015. 6. 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동물검사 의뢰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의뢰건수	323	453	331
국립가축방역기관장	323	453	327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0	0	4

※ 주 1: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장임
 ※ 주 2: 2024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의뢰건수의 경우, 4건 모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의뢰임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셋째, 개정안은 동물검사의 요령 및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인데, 동물검사의 요령과 같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여 안 제39조제4항에 따른 동물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바,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여 법제처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39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를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수행하되,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사기관도 피학대 동물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사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검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문구 등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병성감정 등)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